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역사자료관은 총회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활용한다.

1. 총회 모든 기록물, 교단 대외·해외 관계 기록물, 총회 산하기관 중요 기록물, 노회 중요 기록물 및 발간된 교회사 등을 수집 보존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2. 총회가 소장한 기록물을 홍보 전시한다.
3. 총회가 지정한 유적교회, 유물, 인물, 문화유산 등의 자료를 관리 보존한다.
4. 주제별로 역사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교단역사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산하기관 및 노회, 교회의 역사편찬을 지원한다.

제3조 (기록물에 관한 직무)

역사자료관은 총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수집 및 이관받아 보존·관리한다.
2. 기록물의 보존·관리 방안을 연구·개발한다.
3. 소장 기록물의 열람 편의 제공 및 전시 활동을 한다.
4.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 교육한다.
5. 기타 총회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1. 역사자료관은 관장 1인, 실장 1인, 실무자 1인 이상을 두되 관장은 총회 총무가 당연직으로, 실장은 선교사업국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2. 역사자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본부 소속으로 전문 인력과 기타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

총회 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이하 “기록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고 총회 역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기록관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총무(관장)로 하며 위원은 총회본부 국·부장과 산하기관장으로 한다.
2. 총회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기록관리 소위원회는 기록물의 수집, 보존, 공개, 교육, 이관,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 (역사자료관 수집 및 협조)

1. 역사자료관장은 각 행정부서의 기록물 중 영구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수집 또는 열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 내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해당 기관에서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역사자료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각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 총회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역사자료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 기록물 중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역사자료관에서 지속적으로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기증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제7조 (정리 및 보존)

역사자료관장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수집된 역사기록물의 정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이를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제8조 (이용 및 열람)

1. 역사자료관의 개·폐 시간은 총회본부 처무 규정에 따른다.
2. 역사자료관의 기록물 열람은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제외하고, 역사자료관장의 허락을 받아 교단 신도 및 일반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 단,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3. 역사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관외 대출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필요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관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4. 기록물 보존서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5. 역사자료관은 전산으로 소장목록을 작성, 비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열람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 및 행사)

역사자료관은 필요 시 소장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개최할 수 있고,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다.

제4장 개정 및 시행

제10조 (개정 및 시행)

1. 이 운영세칙의 개정은 역사위원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이 운영세칙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